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3년 5월 30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3년 5월 31일

라. 상정일자 : 2013년 6월 10일

제17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 상 우

나. 제안이유

-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공사 착공부터 완료 시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실제 처리비는 물론 도내 타 시군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이를 인상하여 형평성을 도모.
- 종량제 봉투 가격이 2000년 이후 인상되지 않아 현재 도내 시 평균의 86% 수준, 물가 상승률, 청소예산 자립도(21.8%), 주민부담률 등을 감안, 2014년까지 종량제 봉투 가격 15.4% 인상하여 생활쓰레기의 「배출자 부담원칙」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청소예산 자립도 제고 및 생활쓰레기 감량 유도

다. 주요내용

-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인상 및 반입확인서 서식 개선(안 별표 1 및 별지 제4호 서식)
- 종량제봉투 가격을 2013년 9월 1일부터 7.2% 인상 후, 2014년 9월 1일부터 7.5% 인상하여 총 15.4% 인상(안 별표 5)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 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2013. 3.14)
- 입법예고 : 2013. 4. 10 ~ 4. 30(20일간)(의견없음)
- 구미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2013. 5.22)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박 희 철

□ 본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 수수료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 의 심의를 거쳤으며,
- 생활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종류와 양(量) 등에 따라 수수료 징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또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함.

□ 그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및 반입 서식 변경(별표8 삭제, 별지4 신설) 및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세분하여 수수료 조정 및 인상.

종별	품명	현행		개정안	
		규격	수수료	규격	수수료
공사장 생활폐기물		1톤 미만	15,000원	100kg 이하	4,000원
		1톤 초과 100kg마다	1,500원 추가	100kg 초과 100kg 마다	4,000원 추가
		5톤 미만	75,000원	5톤 미만	200,000원

- 종량제봉투 가격은, 별표5와 같이 7종 단위 종류별로, 연차별 인상토록 함.

□ 검토결과

-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과,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배출자가 읍·면·동장의 배출 확인서(별지4호서식)를 발급 받아, 산동 환경자원화시설로 반입 계근(중량 측정) 처리 후,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 배출자 부담원칙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며, 배출량에 따라 적정 수수료를 징수하고, 2000년 이후 인상되지 않은 종량제 봉투 가격을 2개년에 걸쳐, 인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도 좋을 것으로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